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00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정성국·조경태·진종오

박정훈 • 곽규택 • 김예지

배현진 • 고동진 • 유용원

김용태 · 한지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가 반복되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미국,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 활발한 상품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이처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짐은 물론,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자 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음. 이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29조제3호).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3호 중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를 "투자대상자산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	
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	3
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	
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u>투자</u>	<u>투자</u>
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	대상자산으로 「가상자산 이
는 집합투자기구	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u>을 포함한다</u>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